

육 목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국가정보대학원으로부터 수탁교육을 받는 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려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715

**국회에서 의결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이 달 곤  
장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9784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다목 중 “100분의 4”를 “100분의 9”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나목 중 “행사하는 자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을 “행사하거나 비금융주력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으로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8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이 경우 지분계산에 있어서 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15조의3제1항제1호에서 같다)
-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그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3)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취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6 이상인 경우

다. 라목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금융기관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고의 절차·방법·세부기준과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가목 및 다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4.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그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
5.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비금융주력자가 해당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해당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분포·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비금융주력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조치
2. 보유주식의 처분 등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 부문의 자본비중 감소 등 비금융주력자가 아니게 되도록 하는 조치
-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비금융주력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금융주력자와 금융기관의 예금자,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고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⑧ 비금융주력자가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비금융주력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에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제8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가 해당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의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2.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고자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요건

가. 법인으로서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나.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가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운용 능력·경험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2. 그 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가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 또는 그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에

게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5조의2제3항·제4항·제8항 및 제9항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금융기관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해당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분포·구성내역,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사원 또는 주주의 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참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심사방법, 제2항의 요건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제3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

회사등이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의무) 사모투자전문회사등 또는 그 주주·사원은 제15조제3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재산 운용을 위탁받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이외의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보유한 금융기관의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행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4.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도를”을 “한도등

을”로 한다.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한도 및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에서 “한도등”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100분의 4(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100분의 9(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으로,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3항”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승인요건”을 “승인요건 및 제3항제3호의 승인의 절차·방법,”으로 한다.

3.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기금등과 금융기관의 예금자,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를 갖춘 것

나. 가목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독 및 검사를 받을 것  
다. 그 밖에 기금등의 주식보유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제16조의3제4항제2호 중 “제48조의2제1항제2호”를 “제48조의2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6조의4의 제목 중 “한도초과보유주주”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을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2제3항”으로, ““한도초과보유주주”라”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로, “제15조제5항”을 “각각 제15조제5항, 제15조의2제6항 및 제15조의3제7항”으로, ““초과보유요건””을 ““초과보유요건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도초과보유주주”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도초과보유주주가”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로, “초과보유요건”을 각각 “초과보

유요건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도초과보유주주는”을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으로,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비금융주력자”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하고,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이거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으로,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도초과보유주주가”를 각각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 심사 시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에서 은행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 또는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외국은행등”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동일인이 제2조제1항제9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외국은행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은행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은행등이 직·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 법인으로서 외국법에 따

라 설립된 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조합 등을 포함한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외국 법인이 해당 외국은행등이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3. 금융위원회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관계에 있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 해당 외국은행등의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임원 및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해당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2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금융기관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4제1호 중 “제17조제5항의 규정”을 “제17조제5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3.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4.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5.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매매·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3의6. 제3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제35조의5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48조의2의 제목 중 “전환대상자”를 “대주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전환대상자

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금융기관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가. 제16조의2제3항제3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지배하는 비금융회사의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등 재무상황 부실로 인하여 금융기관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융기관의 대주주(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제35조의4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등(제15조제3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과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 또는 사원이 제15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해당 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재산 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바.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1. 제15조제1항·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을 보유하는 경우

3.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⑥ 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을 “규정을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100분의 20”을 각각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매매·교환한 경우 :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40 이하

17.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 이하

18.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매매·교환한 경우 :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40 이하

19.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경

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40 이하 제65조의9제1항 중 “제16조제2항·제16조의2제5항·제16조의3제5항 또는 제16조의4제5항”을 “제15조의2제9항(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6조제2항·제16조의2제5항·제16조의3제5항·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무상양도를 받은 대주주 또는 자산을 매매·교환한 당사자
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영위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한 자

제69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3항(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5조의4”로 하

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을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5조 및 제446조제50호를 각각 삭제한다.

### ◇은행법 개정이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하되 이에 상응하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감독 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적 연기금의 은행 주식보유규제 완화 등(법 제16조의2제3항)

1) 법에 따라 설치된 비금융주력자인 공적 연기금이 해당 공적 연기금 및 그 관리주체 등과 은행의 예금자 및 다른 주주 등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함.

2) 해당 공적 연기금에 대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감독당국 등의 검사 및 감독 등을 받도록 함.

나.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등(법 제2조제1항 및 제16조의5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본국

의 충분한 금융감독을 받는 해외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함.

2)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대상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은행주식을 4퍼센트 초과 보유하고 최대주주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함.

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제한 완화(법 제16조의2 등)

1)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9로 조정하되 100분의 9를 초과하지는 못하도록 함.

2)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함.

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 강화(법 제48조의2, 제65조의3 및 제66조 등)

1) 금융감독당국 등이 은행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대주주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주주 등의 위법행위 시 적용되는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